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,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(안 별표 3)

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3. 24. ~ 5. 4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나목 중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32